

# ABSTRACT

## A Legal Study on Executive Officer System

Hyung Hoo Roh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ince 1999, The Commerce Cod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of Korea recently have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to enforce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ver corporate management. These new systems are from American corporate law as a way of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 recent years. Unfortunately, the arena which was targeted as the subject of reform has not kept up with the standard of the revised system in real sense. Relatively, numbers of outside directors would be fewer than those of inside directors, and most of outside directors are recommended by managing director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so that they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managing director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highly possess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ways power in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because managing and monitoring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not separated in Korea. Without innov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seem to end in failure. Moreover, in order to make the numbers of outside directors the smallest, many corporations minimized all the numbers of directors who had to be registered. Instead they have been utilizing u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which are not provided for in the law. As a result, although the unregistered executive officer does important business, he does not take any responsibility in making misjudgement, since he does not hold the position of director.

In this circumstance,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proposed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in 2007. This proposed amendemnt includes a proposal for introducing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to Commercial Code. The monitoring functions and the management functions become separated by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it is expected to enforce the oversee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ot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ssues on Executive Officer System of the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Code which is proposed by Ministry of Justice. First, it deals with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n has a glimpse on Executive Officer System in America and Japan below.

## 부 록

### 상법(회사편) 개정안 집행임원제도 관련 신설조문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p> <p>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li> <li>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li> <li>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li> <li>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외한다)</p> <p>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 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 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p> <p>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p> <p>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p> <p>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p> <p>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 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p>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p>
---------------------------------------	--

<p>&lt;신 설&gt;</p>	<p>2.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p> <p>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p> <p>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p>

<p>&lt;신 설&gt;</p>	<p>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p>

<p>&lt;신 설&gt;</p>	<p>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③ <u>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u></p> <p><u>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부터 제398조까지,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u></p>
--------------------	---